

- **(개요)**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

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또는
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

- **(지원요건)**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,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* 등

* 단,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
구분	실시 요건	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
유급	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 단축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% 이상 의 금품 지급
무급	①사전 노동위원회 승인, ②30일 이상 실시, ③실시비율: ▲50% 이상 (5명~19명), ▲10명 이상 (20명~99명), ▲10% 이상 (100명~999명), ▲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% 미만 의 금품 지급 (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)

- **(지원내용)**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

* 단,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%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

구분	유급 고용유지조치 (사업주 지원)		무급 고용유지조치 (근로자 지원)	
	지원수준 (사업주 지급금품 기준)	지원한도(기간)	지원수준	지원한도(기간)
일반업종	• 우선지원 2/3 • 대규모 1/2 또는 2/3* * 단축률 50%이상	• 1일 68,100원 (연 180일)	• 평균 임금의 50% 범위내에서 결정	• 1일 68,100원 (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)
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	• 우선지원 8/10 • 대규모 6/10 또는 7/10* * 단축률 50%이상	• 1일 68,100원 (연 180일)		
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	• 우선지원 9/10 • 대규모 2/3 또는 3/4* * 단축률 50%이상	• 우선지원 1일 7만원 • 대규모 1일 68,100원 (연 180일)		

- **(지원절차)**

